‘26. 10.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 계 과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6-97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개정이유

○ 2025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지적사항(지자체 관사 수 증가, 운영비 지원 등)에 따라 수립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항 정비
- 관사의 사용대상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50조, 제51조, 제55조)
- 직무 관련성을 고려한 사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3조, 제56조)
- 관사운영비·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55조, 제56조)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 정비
- 약칭 조문정비(안 제4조, 제5조), 인용 문구 조문정비(안 제58조) 등

3. 참고사항

가. 방침 결재 여부 : 여
나. 규제심사 대상 여부 : 여
다. 예산수반 여부 : 여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여
마. 성별영향평가 대상 여부 : 여

바. 자치법규 검토(부서의견조회) 대상 여부 : 여

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 여부 : 여

아.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자.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1. ~ 9. 10.(20일간)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라.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해당없음**

바.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사.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자. 관련 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
-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 제22조

차. 참고자료

- 전북자치도 지방정부 관사 운영 개선 협조 요청 공문
- 김제시 관사 현황표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관사 운영 관련)
- 타 지자체 조례 발췌서(인천광역시)

카. 현행 조례

타. 방침결정문

김제시 조례 제 호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건축법」 제57조제1항”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제5조 중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를 “영 제49조”로 한다.

제25조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을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를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단서 중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를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을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7.「종자산업법」 제2조”를 “7. 「종자산업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초지법 시행령」 제14조”를 “「초지법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매각대금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을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를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②「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④「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을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4.「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제2호”를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제8조”를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제8조”로 한다.

제39조제4호 단서 중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7.「사도법」 제4조”를 “7. 「사도법」 제4조”로 한다.

제49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관사의 사용대상) 관사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기관에서 김제시로 일시 인사발령된 직원(부단체장)
2.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되는 직원(타지역 출장소 등)
3. 그 밖에 시장이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공중보건의, 진료소 등)

제51조 단서 중 “1급·2급관사의 사용은”을 “제50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53조 중 “사용대상공무원”을 “사용대상 직원”으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예산”을 “소관 부서 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산유지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를 “재산유지관리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응접셋트·커텐

등 기본장식물”을 “기본 비품(가전, 가구 등)”으로,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를 “경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를 “공동관리비”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관사의 사용대상이 직접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제4항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 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생 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3. (현행과 같음)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 영 제49조----------.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다. <조문개정 2017.9.29.>	제1항제6호 ----------.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문개정 2017.9.29.>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매각 대상 등) ----------. ----------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생 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종자산업법」 제2조의 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을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 종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7. 「종자산업법」 제2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⑥ ----------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 「초지법 시행령」 제14조 ----------.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② 삭 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1. ----------

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가.「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①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 ---------- ---------- ---------- ---------- ---------- ---------- ---------- ---------- ----------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2조제2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8조(조성원가 매각) ----------.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7조의2,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조성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제8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의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동) 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500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	4. ----------.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 ---------- ----------

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 제50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2조(사용책임) ---------- -- 소속 직원----------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3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3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 ---------- ---------- 사용대상 직원---------- ----------.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 ----------. -------- ---------- 소관부서 예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2. ---------- -- 재산유지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삭 제>
4. 응접셋트・커텐 등 기본장식	4. 기본 비품(가전, 가구 등)---

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 경비
5. 전기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삭 제>
6. 전화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삭 제>
7. 수도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삭 제>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8. ---------- 공동관리비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 관사의 사용대상이 직접 사용하는 ----------.
1. 사용대상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삭 제>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삭 제>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삭 제>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생략)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③ (생 략)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④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액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므로 「김제시 조례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비 고
2027년도	공공운영비	6,000	2급관사
2028년도	공공운영비	6,000	2급관사
2029년도	공공운영비	6,000	2급관사
2030년도	공공운영비	6,000	2급관사
2031년도	공공운영비	6,000	2급관사

4. 작성자 : 청사관리팀장 김 희 경

회계과장 김 재 훈

□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수신 회계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결과 회신(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회계과-24931(2026. 9. 11.)호와 관련하여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회신 1부. 끝.

기 획 감 사 실 장

주무관 **최보훈** 의회법무팀장 **이하라** 기획감사실장 **서해영** 2026. 9. 11.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12642 (2026. 9. 11.) 접수 회계과-24960 (2026. 9. 11.)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기획감사실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6 / qhgns0824@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6. 9. 11.

자치법규명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분	제정( ) 개정안(○)
소관부서	회계과	담당자 (행정전화)	한강 3086	기타	회계과-24931 (2026. 9. 11.)
제·개정 및 폐지 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지자체 관사 수 증가, 운영비 지원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항 정비 1) 관사의 사용대상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직무 관련성을 고려한 사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3) 관사운영비·사용료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 정비 1) 약칭 조문정비 2) 띄어쓰기 정비 3) 인용 문구 조문정비				
검 토 의 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 개정안은 김제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사 사용대상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안으로,「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u>규제에 해당하지 않음</u>**				

규제심사 결 과	신설( )	강화( )	완화( )	폐지( )	해당하지 않음(○)
작성자	기획감사실 : 서해영(3206) / 의회법무팀장: 이혜라(3213) / 담당자: 최보훈(3723)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 해당없음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수신 회계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전북김제031)

1. 회계과-26324(2026.8.28.)호와 관련됩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교 육 가 족 과 장

전결 2026. 9. 2.

주무관 [redacted] 여성가족팀장 [redacted] 교육가족과장 [redacted]

협조자

시행 교육가족과-29608 (2026. 9. 2.) 접수 회계과-24061 (2026. 9. 2.)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6905 팩스번호 063-540-6929 / kjekje448korea.kr / 대국민 공개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자치법규 검토결과 : 이견 없음

결 과 보 고 서

김 제 시

문서번호 회계과-24593

제 목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의견 조회 결과 보고

회계과-23625(2026. 08. 28.)호와 관련하여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의견 조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명: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조회기간: 2026. 08. 28. - 09. 07. (11일간)
3. 조회내용: 소관 자치법규 위반 여부 등 조항 검토
4. 조회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제출 의견이 없으므로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끝.

2026. 9. 8.

주무관	한강	청사관리팀장	김희경	회계과장	김재호

협조자

□ 입법예고 결과 : 이견 없음

결 과 보 고 서

김 제 시

문서번호 회계과-24930

제 목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보고

회계과-22813(2026. 08. 19.)호와 관련하여,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조 례 명: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6. 08. 22. ~ 09. 10.(20일간)
3. 예고방법: 김제시보 제552호(김제시 공고 제2026-968호)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제출 의견이 없으므로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끝.

2026. 9. 11.

주무관	팀장	청사관리팀장	김희경	과장	장혜자
회계과장					

협조자

문서관리카드회계과-24930 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 10. 1.(목) ~ 10. 5.(월)

김 제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알림

기획감사실-12714(2026. 9. 14.)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자 : 2026. 9. 16.(수)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참석위원 : 8명
4. 심의안건 : 9건(조례 6, 규칙3)
5. 의결결과 : **원안가결 9건**

연번	심의번호	소관부서	안건명	의결결과
계			총 9건 (조례 6, 규칙3)	
1	2026-43	김진수 의원(의회사무국)	김제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026-44	김영자 의원(의회사무국)	김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026-45	행정지원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4	2026-46	행정지원과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5	2026-47	행정지원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6	2026-48	세정과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2026-49	회계과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2026-50	경제진흥과	김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9	2026-51	건설과	김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붙임 2026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각 1부. 끝.

김 제 시 장

수신자 김제시의회의장, 행정지원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경제진흥과장, 건설과장

주무관 최보훈 의회법무팀장 이혜라 기획감사실장 서택영 2026. 9. 18.
협조자
시행 기획감사실-13105 접수
우 5438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기획감사실 (서암동) / http://www.gimje.go.kr
전화번호 063-540-3723 팩스번호 063-540-3576 / qhgns0824@korea.kr / 비공개(5)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 관련 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 공유재산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국유재산법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4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6. 6. 2.]

[대통령령 제36366호, 2026. 6. 2., 일부개정]

제4조(국유재산의 구분)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국가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 4. 5.>

1. 대통령 관저
2. 국무총리,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공관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시설
4.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 또는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주거용 시설
5.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

6.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용 시설

③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 4. 5.>

④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1. 4. 1., 2013. 4. 5.>

⑤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보존 여부는 총괄청이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개정 2011. 4. 1., 2012. 6. 19., 2013. 4. 5.>

⑥ 총괄청은 법 제6조제2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중 공무원 또는 정부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9호]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청사 신축사업 기본계획
2. 청사 신축사업 설계내역 및 계약방법 등
3. 청사 신축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4. 청사 신축사업 완료내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대상, 공개기준, 공개시점,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사 현황(관사 수, 건물유형, 보유형태 등)
2.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관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제3항 각 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준공연도 및 취득(임차)연도
2. 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

3. 보유형태(소유, 임대), 재산(임대)가격

4.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및 지원근거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5. 사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재정경제부훈령 제49호]

제22조(수리비용 부담) ① 주거용 재산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물의 외관 및 기본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비는 관리기관 등이 부담한다.

②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기타 비용부담의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계 법령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 참고자료 : 전북자치도 지방정부 관사 운영 개선 협조 요청 공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새로운전북 특별한기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정부 관사 운영 개선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1126(2026.3.2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4136(2025.12.23.)호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관사 운영 기본방향 》
가. 단체장 관사 폐지 및 1급·2급·3급 관사를 통합 운영 조례 개정
나. 운영비 등 자부담 원칙 준수 조례 개정
다. 관사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주민 공개

3. 관사 운영 기본방향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붙임과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군(붙임의 참고 참조)은 '26년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정부 관사 운영 개선 협조사항 1부. 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관인생략

수신자 전주시장(회계과장), 군산시장(회계과장), 익산시장(회계과장), 정읍시장(회계과장), 남원시장(재정과장), 김제시장(회계과장), 완주군수(재정관리과장), 진안군수(재무과장), 무주군수(재무과장), 장수군수(재무과장), 임실군수(재무과장), 순창군수(재무과장), 고창군수(재무과장), 부안군수(재무과장)

주무관 박초원 재산관리팀장 송주연 회계과장 전결 2026. 4. 20. 김혜자
협조자
시행 회계과-8686 (2026. 4. 20.) 접수 회계과-11237 (2026. 4. 20.)
우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호자로 225, 자치행정국 회계과 (효자동3가) / http://www.jeonbuk.go.kr
전화번호 063-280-2588 팩스번호 063-280-0000 / cw5708@korea.kr / 비공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Go Beyond, Create Harmony"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

지방정부 관사 운영 개선 협조 사항

□ 추진 배경

○ '25년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관사 수 증가, 운영비 지원 등 지적**과 함께 **행안부가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제기

< '2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 지난 정부 국정과제로 '검소한 관사 운영'을 제시, 행안부도 관사운영 개선 권고 하였음에도 관사 수'는 지속 증가, 5년간 취득·운영비 1,078억원 소요

* 1,828개('21년) → 1,941개('22년) → 2,144개('23년) → 2,148개('24년) → 2,165개('25년)

▸ 행안부가 지방정부 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지침을 마련할 필요

○ 현재는 단체장 관사만 공개하고 있으나 **'27년부터 전체 관사 현황**을 **공개**해야 함에 따라 **조례 정비 필요**

□ 운영 현황

○ (**관사 수**) **1급관사**는 **감소**하였으나 직원이 사용하는 **3급관사 증가로 총 관사 수는 증가(1,828개→2,165개, 증 18.4%)**

* (1급관사) '21년 10개 → '25년 6개, (3급관사) '21년 1,629개 → '25년 1,965개

○ (**운영비 지원**) 공공요금 등 관리비가 해당되며 자부담 원칙, 일부 지방정부는 **1·2급 관사 위주**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

○ (**사용료 부과**) 관사 사용에 따른 **임차비** 성격으로 대부분 **1·2급관사는 무상, 3급관사**는 목적·용도에 따라 **유·무상** 사용 중

□ 개선 사항

○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25.12.23.)

《 관사 운영 기본방향 》

❖ 단체장 관사 폐지 및 1급·2급·3급 관사를 통합 운영 조례 개정

❖ 운영비 등 자부담 원칙 준수 조례 개정

❖ 관사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주민 공개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26.3.)

- **관사 운영 현황 공개 범위**를 단체장 관사에서 **전체 관사**로 **확대**

- 1 -

□ 협조 사항

○ 지방정부는 **협조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추진**

〈 가이드라인 및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조속히 조례 개정 추진 〉

❖ **단체장 관사 폐지, 1급·2급·3급의 관사 구분 폐지**

※ ① (예 : 조문개정) 제0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직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현행) 소속공무원 → (개정) 소속직원

② (예 : 조문 삭제) 제0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관사 ~3. 3급관사

❖ **관리비, 운영비 등 사용자 부담 근거 마련**

※ (예) 제00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 각 호의 예외 조항(예산 지원 근거)에 사용자 부담 항목*은 삭제

* (사용자 부담)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

❖ **조례 개정 시기 조정('26년까지 조례 개정 완료)**

❶ 조례에 관사 규정이 없는 15개 지방정부 ⇒ **개정사항 없음**

<행안부 협조 사항을 반영하여 '26년까지 조례 개정 완료>

❷ 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조례는 있는 26개 지방정부
⇒ **관련 조문 삭제 등 정비 추진**

❸ 조례 개정 계획을 제출한 132개 지방정부 ⇒ **일정대로 추진(26년 限)**

❹ 개정 계획이 없거나 검토 중 또는 일부 개정 계획만 있는 70개 지방정부
⇒ **협조 사항을 반영하여 '26년까지 조례 개정**

※ <가이드라인 확인> 1. 부단체장, 해외 파견 직원, 공중보건의 관사를 폐지하라는 것이 아님
2. 운영비는 자부담 원칙, 필요시 지원(예외) 규정 마련

□ 향후 계획

○ 지방정부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비 필요사항 안내(3월)

○ 조례 개정 등 관사 운영 조치 이행 계획 점검(6월)

○ 관사 운영 현황 주민 공개(서식1·2, '26.12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 관사 운영 기본방향 》

❖ 단체장 관사 폐지 및 1급·2급·3급 관사를 통합 운영 조례 개정 필요
❖ 운영비 등 자부담 원칙 준수 조례 개정 필요
❖ 관사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주민 공개

○ (관사운영 기본원칙) 현행 **조례**에서 직위별로 구분하고 있는 **1·2·3급 관사**를 **일원화**하고, **운영방식**은 **소속 직원**의 **직무 관련성 기준으로 개선**

* 조례 개정(관사 정의) : 소속 공무원 → 소속 직원

○ (사용허가 등) 아래와 같이 **직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대상자, 사용허가·취소, 사용료 부과**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

※ 사용료는 해당 관사 사용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유무상 허용

◆ 다른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일시 인사발령된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거주용 재산(부단체장 등)
◆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는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거주용 재산(타지역 출장소, 협력관 등)
◆ 원래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곤란한 도서·벽지 등으로 인사발령된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거주용 재산(섬 발령 근무자 등)
◆ 기타 관사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거주용 재산(특수지비상근무자, 산림보호·수문관리 종사자 등)

○ (운영비 등) 시설관리 및 개인사용 목적에 따라 **운영비 부담 주체 명확화**

- 전기·수도·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 부담**
- **건물 설비**(외관, 보일러 등)나 **기본 비품**(내장형 가전, 가구 등)의 **구입·교체·수리**에 필요한 **시설관리 비용**은 관리기관인 **지자체가 부담**

※ 사용자의 귀책 사유으로 파손된 경우는 사용자가 수리비 등 부담

○ (주민공개 강화) 관사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주민통제 강화**를 위해 관사운영 현황의 **공개 범위 확대**(단체장 관사 → 관사)

- **관사 통합운영 지자체**는 관사수, 소유형태, 운영비 등 **총괄현황 공개**<서식1>
- **관사운영 미 개선 지자체**는 1·2급관사 등 **세부내역도 공개**<서식1, 2>

<서식1, 2>에 따른 공개는 '26년 현황에 대해 '27년부터 공개

Ⅰ 〈서식1〉 관사 운영 현황

□ 관사 현황 : 총00개

○ 소유 : 00개 / 단독00, 아파트00, 빌라00

○ 임차 : 00개 / 단독00, 아파트00, 빌라00

□ 예산지출내역 : 총000원

○ 취득 : 0000원(00개), 임차 : 0000원(00개)

○ 시설유지관리비 : 000원 ※ 리모델링, 비품구입 등

○ 운영비 : 000원 ※ 수도, 가스, 통신비 등

Ⅱ 〈서식2〉 단체장·부단체장 전용 관사 운영 현황

□ 단체장 · 부단체장 관사 * 각각 작성

○ 보유형태 : 소유('03년 신축 취득), 임차('26년, 전세)

○ 유형 : 단독주택(3층, 연면적 100㎡) / 주택가격 000백만원

○ 사용 현황 : 사용중

- (1층) 주민개방, (2층) 회의실, (3층) 주거공간

○ 2026년 예산지출 내역 : 총000,000원

- 취득(임차)비 : 00,000원
- 시설유지관리비 : 000원(지원근거 : 공유재산 관리 조례 00조)
- 운영비 : 000원(지원근거 : 공유재산 관리 조례 00조)

- 4 -

참고 지방정부 관사 운영 이행 조치계획

❶ 15개 지방정부 ⇒ 관사 관련 조례가 없으므로 개정사항 없음

(서울) 노원, (부산) 서구·해운대·사하·사상, (대구) 수성, (인천) 본청·동구·미추홀·부평, (광주) 본청, (대전) 서구·유성, (전북) 완주, (전남) 곡성

<행안부 협조 사항을 반영하여 '26년까지 조례 개정 완료>

❷ 26개 지방정부 ⇒ 관사 미운영으로 관사 관련 조문 삭제 등 정비 추진

(서울) 도봉·동대문·성동·성북·송파·영등포·은평·중구, (부산) 중구·부산진·동래·남구·북구·연제·강서, (대구)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달성, (광주) 서구·남구·북구, (경남) 김해

❸ 132개 지방정부 ⇒ 일정대로 추진(26년까지 조례 개정 완료)

(서울) 강남·강동·강서·광진·구로·금천·동작·마포·양천·중랑, (부산) 본청·동구·영도·금정·기장, (대구) 군위, (인천) 중구·연수·남동·계양·서구·강화·옹진, (광주) 동구·광산, (대전) 본청·동구·중구·대덕, (울산) 본청·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 (세종) 본청, (경기) 수원·용인·고양·화성·남양주·평택·시흥·파주·김포·의정부·광주·양주·광명·오산·구리·포천·의왕·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강원) 춘천·동해·태백·삼척·평창·정선·화천·인제·고성·양양, (충북) 본청·청주·충주·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 (충남) 본청·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금산·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전북) 본청·익산·정읍·남원·김제·무주, (전남) 나주·구례·화순·장흥·함평·영광·장성·완도·신안, (경북) 본청·포항·영천·안동·영주·상주·문경·의성·청도·고령·성주·칠곡·예천·봉화·울릉, (경남) 본청·창원·함안·함양·사천, (제주) 본청

❹ 70개 지방정부 ⇒ 협조 사항을 반영하여 '26년까지 조례 개정 완료

(서울) 본청·강북·관악·서대문·서초·용산·종로, (부산) 수영, (대구) 본청, (경기) 본청·성남·부천·안산·안양·하남·군포·이천·안성, (강원) 본청·원주·강릉·속초·홍천·횡성·영월·철원·양구, (충남) 부여, (전북) 전주·군산·진안·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전남) 본청·목포·여수·순천·광양·담양·고흥·보성·강진·해남·영암·무안·진도, (경북) 경주·김천·구미·경산·청송·영양·영덕·울진, (경남) 창녕·진주·양산·거제·의령·고성·산청·합천·통영·하동·남해·밀양·거창

□ 참고자료 : 김제시 관사 현황표

(2026년 7월 기준)

연번	재산명	관리부서	용 도
1	2급관사	회계과	부시장 관사
2	3급관사	기획감사실	세종사무소장 숙소
3	3급관사	체육진흥과	태권도 선수단 숙소
4	3급관사	체육진흥과	태권도 선수단 숙소
5	3급관사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의사관사
6	3급관사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의사관사
7	3급관사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의사관사
8	3급관사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의사관사
9	3급관사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의사관사
10	3급관사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의사관사
11	3급관사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의사관사
12	3급관사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의사관사
13	3급관사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의사관사
14	3급관사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의사관사
15	3급관사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의사관사
16	3급관사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의사관사
17	3급관사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의사관사
18	3급관사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의사관사
19	3급관사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의사관사
20	3급관사	보건위생과	공중보건의사관사
21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22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23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연번	재산명	관리부서	용 도
24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25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26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27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28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29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30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31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32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33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34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35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36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37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38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39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40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41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42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43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44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45	3급관사	보건위생과	보건진료소장 생활관사

※ 1급 관사 : 해당없음 / 2급 관사 : 1개소 / 3급 관사 : 44개소

□ 참고자료 : 전북자치도 내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관사 운영 관련)

(2026년 6월 기준)

시군명	조 례 명	관사 운영 개선 관련 조문 마련 여부		비고
		여	부	
전북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전주시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군산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익산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정읍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남원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김제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완주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사 관련 조례 없음		2015.12.28. 관사 조례 삭제
진안군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무주군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장수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임실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순창군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고창군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부안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 참고자료 : 타 지자체 조례 발췌서(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9. 25.]

[인천광역시조례 제7357호, 2024. 9. 25., 일부개정]

제7장 관사관리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공무원 관사: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으로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공용주택
2. 직원 관사: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업용재산 중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공용주택

[전문개정 2023.11.9.]

제51조(관사의 사용대상) ①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무원 등이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긴급상황 처리를 위하여 상시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따라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에는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를 말한다)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 사람 중 주택의 소재지에서 근무지로의 이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23.11.9.]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9.>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지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22.11.9., 2023.11.9.>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개정 2013.2.21., 2022.11.9., 2023.11.9.>

2. 건물유지 수선비

3. 화재보험료 등 재산유지 관리비

4.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의 설치 및 교체

5.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그 밖의 주택관리비 등

6. 삭제<2023.11.9.>

7. 삭제<2023.11.9.>

8. 삭제<2023.11.9.>

9. 삭제<2023.11.9.>

제5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의 임시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2.11.9., 2023.11.9.>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춰 두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비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1.9.>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현행 조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정) 1995.02.04 조례 제 50호
(일부개정) 1995.08.31 조례 제 146호
(일부개정) 1998.05.12 조례 제 228호
(일부개정) 1999.06.05 조례 제 285호
(일부개정) 2000.07.25 조례 제 341호
(일부개정) 2001.12.23 조례 제 393호
(전문개정) 2006.05.04 조례 제 521호
(일부개정) 2008.03.21 조례 제 576호
(일부개정) 2010.05.25 조례 제 680호
(일부개정) 2013.04.17 조례 제838호
(일부개정) 2015.07.22 조례 제944호
(일부개정) 2016.11.07 조례 제106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1133호
(일부개정) 2018.10.31 조례 제1178호
(일부개정) 2019.07.17 조례 제1241호
(일부개정) 2020.06.08 조례 제1301호
(일부개정) 2020.10.28 조례 제1342호
(일부개정) 2021.09.17 조례 제1425호
(일부개정) 2022.03.18 조례 제1488호
(일부개정) 2022.11.09 조례 제1542호
(일부개정) 2024.12.10 조례 제1725호
(일부개정) 2025.04.01 조례 제174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정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일부개정 2020. 6. 8.>

④ 당연직 위원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단장과 소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 6. 8., 2021. 9. 17.>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

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 6. 8.>

1.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조문 개정 2016.11.7>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0. 6. 8.>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2.11.9.>
2. <삭제 2016.11.7>
3.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2. 11. 9.>
4.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5.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6.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신설 2016. 11. 7.>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 11. 7.> <개정 2024.12.10.>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일부개정 2016. 11. 7.>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10. 5. 25 조례680>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일부개정 2020. 10. 28.>

4. <삭제 2020.06.08.>

제4조의2(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 신설 2016.11.7>

제4조의3(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 신설 2016.11.7> <일부개정 2020. 6. 8.><일부개정 2022. 11. 9.>

제4조의4(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관리 업무 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16.11.7>

제4조의5(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조문 신설 2016.11.7>

제4조의6(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6.11.7>

제4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대리관계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감정·조사 등 직접·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16.11.7>

제4조의8(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6. 8.>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조문 신설 2016.11.7>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6. 11. 7.> <일부개정 2020. 6. 8.>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1.9.>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개정 2016. 11. 7.>

2. 주위 환경 <개정 2016. 11. 7.>

3. 이용 현황 <개정 2016. 11. 7.>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11. 7.>

5. <삭제 2016.11.7>

6. <삭제 2016.11.7>

7. <삭제 2016.11.7>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 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2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 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1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김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0.]

제11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

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건당 기준가격은 재산의 취득의 경우 10억원, 처분의 경우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10.>

2. 1건당 기준면적은 토지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로 한다.<일부개정 2022.11.9., 2024.12.10.>

[제11조에서 이동 2024.12.10.]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0. 5. 25 조례680>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 11. 7., 2020. 6. 8., 2024.12.10.>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15. 7. 22.>

제17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0. 5. 25 조례680>

제17조의2(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지역특산품 또는 시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0. 28.>

1.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제시 공동브랜드(이하 “지평선 상표”라 한다)”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축산물 생산・전시 및 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 지역특산품 또는 시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0. 10. 2

8.>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시 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시지역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0. 5. 25 조례680>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0. 5. 25 조례68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0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10. 5. 25 조례680>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10. 5. 25 조례680> .<개정 2015.7.22 조례44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0. 5. 25 조례680>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0. 5. 25 조례680>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1. 7.>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1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신설 2015.7 22 조례447>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일시사용허가・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일반재산<개정 10. 5. 25 조례680>

제1절 대 부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10. 5. 25 조례680>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

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지역특산품 또는 시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0. 28.>

1.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평선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축산물 생산・전시 및 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 지역특산품 또는 시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다. <조문개정 2017.9.29>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문개정 2017.9.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5.7.22. 조례447>

4.「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9. 7. 17.>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 가격과 지형이 변경되어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어긋나 대부목적으로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24. 12.10.>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 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0. 5. 25 조례680>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조합이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요율은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4.12.10.>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4.12.1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 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9. 7. 17.>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

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당해 “시”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종자산업법」제2조의 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을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 종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 7. 17.>

8.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신설 2020. 10. 28.>

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신설 2020. 10. 28.> <제5항에서 이동 2024.12.10.>

제28조

<삭 제 08. 3. 21 조례576>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 7. 17.> <일부개정 2020. 6. 8.>

② <삭제 2019.7.17.>

③ 제1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7.>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7.> <일부개정 2020. 6. 8.>

⑤ <삭제 2019.7.17.>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 6. 8.>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06.08.>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공용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일부개정 2020. 6. 8.>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일부개정 2020. 6. 8.>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일부개정 2020. 6. 8.>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

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9. 7. 17.>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 11. 7.>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7.]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개정 2024.12.10.>

③「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7.22 조례447>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⑤ 영 제17조제7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지역특산품 또는 시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8.>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24.12.10.>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4.12.1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김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 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1. <삭제 2024.12.10.>

2. <삭제 2024.12.10.>

3. <삭제 2024.12.10.>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 10. 28.>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2024.12.1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등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10. 28., 2024.12.10.>

제34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6. 11. 7., 2018. 10. 31.>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1. 7., 2018. 10. 31.>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제2절 매 각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 11. 7., 2018. 10. 3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신설 2016. 11. 7.>

② <삭제 2016.11.7>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7., 2018. 10. 31.>

1. 영 제38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조성한 농공단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 7. 17.>

④ <삭제 2016.11.7>

⑤ <삭제 2016.11.7>

⑥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율을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16.11.7, 2018.10.31>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7., 2018. 10. 31.>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7., 2018. 10. 31.>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08. 3. 21 조례576>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7조의2,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조성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도지사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4. 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의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08. 3. 21 조례576>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500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3. 18.>

5. “시“ 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시“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08. 3. 21 조례576>

6.「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동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7.22 조례447>

7.「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 9. 29.>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 7. 17.>

제3절 신 탁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10. 5. 25 조례680>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1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

삭 제 <08. 3. 21 조례576>

제6장 청사관리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사업소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

관・임차・노후・협소・위치의 부적합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 10. 28.>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영 제95조에 따른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5. 7. 22 조례447>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영 제95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영 제95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

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공무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 소유의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 11. 7.>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관사:시장 관사
2. 2급관사: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

부

제53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4. 응접셋트·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5. 전기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2월 2회 이내 분납 <개정 2024.12.10.>
2. 100만원 초과: 6월 4회 이내 분납 <개정 2024.12.10.>
3. 200만원 초과: 1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24.12.10.>
4. 300만원 초과: 2년 10회 이내 분납 <개정 2024.12.10.>
5. 4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신설 2024.12.10.>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

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1. 7., 2018. 10. 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담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개정 2019. 7. 17.>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7.22 조례447>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1. 7., 2018. 10. 31.>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8. 3. 21 조례576>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08. 3. 21 조례576>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개정 2019. 7. 17.>

제66조

<삭제 2016.11.7>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 3. 21 조례5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5. 25 조례68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일부개정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17 조례8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22 조례9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시 이자율 적용례) 제34조의2,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62조 제3항, 제62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1.7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17.9.29. 조례 제11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에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8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17. 조례 12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일부개정 2020.06.0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일부개정 2020.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88호, 일부개정 2022.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42호, 일부개정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신설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의3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조례 제1725호, 일부개정 202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49호, 조직개편에 따른 김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방침결정문

문서번호	회계과 -21546
보존기간	5 년
결재일자	2026. 8. 4.
공개여부	부분 공개

주무관	팀 장	과 장	국 장	부시장	시 장	결재
한강	김희경	김재훈	[illegible]	이혜서	정성주	
협 조	의회법무팀장 이혜라	기획감사실장 [illegible]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 결 재 참 조 》

□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항 정비
- 단체장 관사 폐지 및 1급, 2급, 3급 관사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 관사 운영비·사용료에 관한 사항(지자체부담 ⇒ 자부담)

❍ 김제시 관사 현황
- 1급 관사: 해당없음, 2급 관사: 1건, 3급 관사: 44건

자치행정국 회 계 과